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

제출년월일 : '98. 9 P.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제안이유

- 98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및 정원을 축소하게되어 정원을 개편안에 부합되게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개편된 조직에 따라 정원 재조정

나. 평창군지방공무원 정원을 본청,의회사무과,소속기관,사업소,읍·면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던 것을 집행기관과 의회기관으로 구분하여 규정(안 제2조, 제3조 본문)

다. 본청 정원 "235명"

의회사무과 정원 "11명"

직속기관 정원 "135명"

사업소 정원 "8명"

읍·면(그 출장소를 포함한다) 정원 "240명" 을

집행기관의 정원 "542"명

의회사무과의 정원 "10명" 으로 조정(안 제2조 각호)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평창군의 본청·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평창군의 집행기관 및 의회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로 하고,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542명
2. 의회사무과의 정원 10명

제3조중 "평창군의 본청·소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을 "평창군의 집행기관 및 의회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2000년12월31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구조 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u>평창군의 본청·소속 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본청 : 235명</u> 2. <u>의회사무과 : 11명</u> 3. <u>직속기관 : 135명</u> 4. <u>사업소 : 8명</u> 5. <u>읍·면(그 출장소를 포함한다): 240명</u> <p>제3조(직급별정원의규정) <u>평창군 본청·소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2조(정원의 총수) ---- <u>집행기관 및 의회기관에 두는 ----</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집행기관의 정원 : 542명</u> 2. <u>의회사무과의 정원 : 10명</u> <p>제3조(직급별정원의규정) ----- <u>집행기관 및 의회기관 -----</u></p>			